###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62 발의연월일: 2025. 2. 24.

발 의 자:김기현·서일준·강승규

박성훈ㆍ이헌승ㆍ김 건

김승수 · 박성민 · 조정훈

나경원 · 서명옥 · 서천호

신성범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또는 징계안의 대상이 되는 의원은 해당 안건에 관한 본회의 등에 출석하여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국회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변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는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구실을 대며 그 까닭을 말함'이고, 실제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를 따져 보았을 때에도 기본적으로 당사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있으므로,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국회의원이 자신의 징계안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따라 '변명'을 '의견진술'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2조 및 제160조).

법률 제 호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2항 중 "변명"을 각각 "의견진술"로 한다.

제160조의 제목 "(변명)"을 "(의견진술)"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및 후단 중 "변명"을 각각 "의견진술"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2조(의결) ① (생 략)           | 제142조(의결) ① (현행과 같음) |
| ②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             | ②                    |
| 서 스스로 <u>변명</u> 하거나 다른 의    | 의견진술                 |
| 원으로 하여금 <u>변명</u> 하게 할 수    | <u>의견진술</u>          |
| 있다.                         |                      |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제160조 <u>(변명)</u> 의원은 자기의 징 | 제160조 <u>(의견진술)</u>  |
| 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            |                      |
| 회에 출석하여 <u>변명</u> 하거나 다     | <u>의견진술</u>          |
| 른 의원으로 하여금 <u>변명</u> 하게     | <u>의</u>             |
|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          | <u> 견진술</u>          |
| <u>명</u> 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    | 의견진술                 |
| 하여야 한다.                     | <u>.</u>             |